

울산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나1612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 소 인

AAAA

피고, 피항소인

BBBBBBB BBBBBBBBBB BBBB

변 론 종 결

2022. 4. 14

판 결 선 고

2022. 5. 12

제1심 판 결 2020가단114893

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CCC 사이에 DD FF군 GG면 HH리 산\*\*\*-\*\* 임야 41366㎡에 관하여 2019. 12. 28.

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는 CCC에게 DD FF군 GG면 HH리 산\*\*\*\*-\*\* 임야 41366㎡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. 1. 29. 접수 제14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,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1내지 2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

판사 ○○○